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7. 6 선고 2020가합4052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현 담당변호사 이정호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피고 A와 C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11,017,530원의 한도 내에서, 2018.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22,203,506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 B와 C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194,280,6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에게, 피고 A는 133,221,036원, 피고 B은 194,280,6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의 4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N

청 구 취 지

C과 피고 A 사이에 2018. 12. 26. 및 2018. 12. 31.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C과 피고 B 사이에 2018. 12.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는 240,000,000원, 피고 B은 3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3. 17. D과 E에게 성남시 수정구 F 다가구주택 762.14㎡(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685,000,000원(단, D과 E이 승계하기로 한 임차보증금 1,258,000,000원을 공제한 실제 매매대금은 1,427,000,000원)에 매도하였다(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C은 그 후 2018. 6. 29.까지 D과 E으로부터 매매대금 1,427,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8. 6.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D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8. 8. 31. 이 사건 매매계약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31,384,000원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다.

라. C은 D과 E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가.항 기재 매매대금으로 2018. 12. 26. 아들인 피고 B에게 350,000,000원을, 딸인 피고 A에게 200,000,000원을, 2018. 12. 31. 피고 A에게 40,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증여’, ‘이 사건 제2증여’ 및 ‘이 사건 제3증여’라고 하고,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마. C은 2019. 9.경 원고 산하 성남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2019. 10. 17. 이 사건 매매계약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493,762,360원(가산세 87,273,216원 포함)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바. C은 2020. 4. 20. 현재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523,388,070원(= 양도소득세 493,762,360원 + 가산금 29,625,710원, 이하 ‘이 사건 조세’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4,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A는 240,000,000원을, 피고 B은 35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세무사에게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고, 2019. 9.경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보다 많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줄 알지 못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한편,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8. 6. 30.이므로,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미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C이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 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다르긴 하나 C의 자녀들인 피고들로 채무자인 C과 피고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점, ② 암 투병 중이었던 C이 생전에 신변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증여하였는바, 그 동기와 재원이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제1, 2증여는 2018. 12. 26.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3증여는 그로부터 5일 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의 구비여부는 2018. 12. 31. 당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31. 기준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C은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triangle 327,501,715\text{원} = 262,498,285\text{원} - 590,000,000\text{원}$)에 이르렀다.

2018. 12. 31. 당시 C의 재산		
적극재산		
내 용	종류	금액(단위: 원)
이 사건 각 증여	현금	590,000,000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예금	123,152,993
G조합 (계좌번호 2 생략)	예금	770,821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예금	42,332,795

H은행(계좌번호 4 생략)	예금	0
우체국(계좌번호 5 생략)	예금	4,036
합 계		756,260,645
소극재산		
이 사건 조세채무	채무	493,762,360
순자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262,498,285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는 C의 적극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1) 사해의사의 추정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관련 법리에 따라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들도 이 사건 각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C과 피고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8호증, 을 제3,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데, 공부상 이 사건 주택은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 3, 4층은 주택이나, 실제로는 1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하였으므로, 위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② C은 2003. 11. 2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약 15년간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였으므로, 누구보다 이 사건 주택의 1층이 불법개조된 점 및 그로 인해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C은 이러한 사실을 세무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위임하였다.

③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C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을 증여하여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하는데, 위 혐의없음 처분은 그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C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C과 피고들이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선의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위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한편, 가산금과 증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2) 판단

이 사건 각 증여는 금전의 증여로서 가분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C의 적극재산 가액이 소극재산 가액을 262,498,285원 초과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해 부족하게 된 공동담보의 가액은 327,501,715원(= 이 사건 각 증여액

590,000,000원 - 262,498,285원)이다. 위 공동담보 부족분 327,501,715원이 앞서 피보전채권인이 사건 조세채권 523,388,070원(= 양도소득세 493,762,360원 + 가산금 29,625,710원)보다 적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증여를 327,501,7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증여의 상대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증여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증여는 194,280,678원¹⁾의, 이 사건 제2증여는 111,017,530원²⁾의, 이 사건 제3증여는 22,203,506원³⁾의 각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는 133,221,036원(= 111,017,530원 + 22,203,506원), 피고 B은 194,280,6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종선, 판사 이인호, 판사 김형준

1) 194,280,678원 = 327,501,715원 × 350,000,000원 / 590,000,000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111,017,530원 = 327,501,715원 × 200,000,000원 / 590,000,000원

3) 22,203,506원 = 327,501,715원 × 40,000,000원 / 590,000,000원